

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자치위원회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7. 12. 21.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1월 12일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6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12.1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이석표)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
- 나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,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
- 다. 도지사는 구내식당·매점·의무실·체력단련실·콘도 등의 직원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라.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, 우수·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,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마. 후생복지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(안 제8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, 기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,
-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³⁾의 규정은 본 조례안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

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, 입법기술상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사료됨.

-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고,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것에 비해, 자치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없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4)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9조5)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음.

- 앞서 언급했듯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, 그 내용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라고 판단됨.

-
- 3) **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)**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4) 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5) 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가.~라. (생략)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- 가.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자치사무는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
- 나.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근거할 수 있으므로
- 다.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합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안 제1조 본문 중 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

를 삭제함.

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VI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붙임 :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.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12. 14.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수정이유

가.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자치사무는 개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

나.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로 근거할 수 있으므로

다.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합함.

수정주요내용

- 안 제1조 본문 중 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삭제함.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본문 중 “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”를 “이 조례는 충청북도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7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7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,
-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,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)
-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
- 도지사는 구내식당·매점·의무실·체력단련실·콘도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, 우수·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,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후생복지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속공무원”이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(청원경찰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후생복지제도”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·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선택적 복지제도”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질병·육아·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
2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·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
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)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직원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·예식장·자동판매기
2. 의무실·체력단련실
3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·연수원·콘도 등

②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
2. 우수·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
3.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
4.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5.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

제8조(운영의 위탁) 이 조례에 의한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)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